

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(제18조제3호관련)

1.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(단위:mm)

설 치 장 소		관경(mm, 외경)	20 미만	20 이상 ~ 50 미만	50 이상 ~ 70 미만	70 이상 ~ 100 미만	100 이상
		설계용 외기온도(℃)					
·외기에 노출된 배관 ·옥상 등 그밖에 동파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부위		-10미만	200 (50)	50 (25)	25 (25)	25 (25)	25 (25)
		-5 미만 ~ -10	100 (50)	40 (25)	25 (25)	25 (25)	25 (25)
		0 미만 ~ -5	40 (25)	25 (25)	25 (25)	25 (25)	25 (25)
		0 이상 유지	20				

- 1) ()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
- 2)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$0.04\text{kcal/m}^2\cdot\text{h}\cdot^\circ\text{C}$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
- 3) 설계용 외기온도: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

2. 수도계량기보호함(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)

- 가.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
- 나.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(단열재는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)
- 다.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
- 라.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
- 마.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